

서울고등법원 2022. 3. 2 선고 2021나2030090 판결 [계약금반환 청구 등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

담당변호사 이동희

피고, 피항소인 D

변 론 종 결 2021. 12. 22.

판 결 선 고 2022. 3. 2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16. 선고 2020가합588339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A,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1심 공동피고 C이 항소하였으나 당심 변론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고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로 분리확정되었다)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중 “1. 기초 사실” 부분(2면 11행부터 4면 표 아래 5행까지)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.

○ 인용 부분의 ‘원고 주식회사 A’를 ‘주식회사 A’로, ‘원고 A’를 ‘A’로, ‘피고 C’을 ‘C’으로, ‘원고 B’를 ‘원고’로, ‘피고 D’를 ‘피고’로, ‘피고들’을 ‘피고 및 C’으로 모두 고친다.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가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에서 정한 C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이 사건 채무이행각서에는 ‘C은 원고에게 2020. 9. 23.까지 1억 원 일부 채무관계를 변제하기로 하며, 그 상환은 피고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실시한다.’, ‘피고는 위 담보대출금을 통한 상환 1억 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질 것을 동의한다.’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,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

즉, ① 이 사건 계약금 3억 5,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A가 C에게 지급한 것으로, C은 위

계약금을 A에 반환하여야 하는 점, ② 비록 위 계약금 반환을 약속하는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에는

형식상 A가 아닌 B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나, 실제로는 B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A를

대리하여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(이와 달리 B가 A를 대신하여 위 계약금반환채권의 채권자가

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), ③ 피고도 남편인 C의 A에 대한 계약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다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승규, 판사 김동완, 판사 배용준